

증가해 2014~18년 계획 상 증가율보다 연평균 1.1%p(5.1% → 4.0%) 낮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재정지출의 증가율은 보수적인 재정수입 전망 하에서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2014~18년 계획 상의 증가율보다 1.9%p와 낮게 설정하는 등 대폭 하향 조정(4.5% → 2.6%)했다.

정부는 균형재정 기조 유지를 위해 재정지출 증가율을 재정수입 증가율보다 1.4%p 낮은 수준으로 관리해 재정기조를 점진적으로 정상화할 계획이다.

추경 등 확장적 재정정책의 추진 등으로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이전 계획보다는 다소 악화(-1.0% → -1.4%)될 것으로 예상되나, 세입기반 확충 및 세출절감 등 재정건전화 노력을 통해 2015년의 GDP 대비 -2.1%에서 2019년 -0.9%까지 단계적으로 개선하고 국가채무비율도 40%대 초반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2. 중기 자원배분 기본방향

중기 자원배분은 ①맞춤형 복지, 청년일자리 창출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 ②성장동력 창출 및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적극적·선제적 투자 ③고령사회, 통일 등 미래 여건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 등 국민체감도를 높이는 재정운용을 기본방향으로 할 계획이다.

우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복지지원을 강화하고, 일·학습병행제 확산 및 정규직 전환 등을 통해 청년 고용절벽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 조성을 위해 안전사고 예방 및 신속한 구조체계 확립을 위한 투자를 강화하고 안전 R&D 등을 통해 관련 산업 투자를 촉진할 것이다.

보편적 문화향유권의 확대를 위해 문화 분야 복지지원을 강화하고 교육비 부담 경감을 통한 교육기회 확대도 지속 추진한다.

다음으로 신성장 동력 창출 및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역혁신거점화, 창조경제밸리 글로벌 허브 육성 등을 중점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FTA 활용도 제고 등을 통해 중소기업 경쟁력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는 한편 농업의 6차산업 활성화 및 농촌 정착비용 최소화 지원도 병행한다.

마지막으로 고령사회, 통일 등에 대비하기 위해 여성고용 지원을 확대하고 전방위 국방태세 확립을 강화하는 등 실질적 통일 시대 준비에도 노력을 기울인다.

3. 재정건전성 제고 추진 방안

한편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 재정총량 관리 외에도 단계적인 추진전략을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재정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정부의 자산운용시스템을 개선하는 한편 비효율성이 잔존해 있는 지방재정 및 정부 R&D를 혁신하는 등 재정체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보조금 등 부정부패를 근절하고 민간투자 활성화 및 국유재산 개발 및 관리 등을 통해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활용해 재정을 절감할 것이다.

2015~19년 중기 재정총량 전망

(단위: 조원)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연평균 증가율
	본예산	추경					
재정수입	382.4	377.7	391.5	406.8	426.6	446.6	4.0
국세수입	221.1	215.7	223.1	233.1	244.2	255.6	3.7
세외수입	27.6	28.3	27.2	26.6	26.7	26.7	-0.8
기금수입	133.6	133.6	141.2	147.0	155.8	164.3	5.3
재정지출	375.4	384.7	386.4	396.7	406.2	416.0	2.6
예산지출	260.1	263.6	262.8	271.4	275.7	278.6	1.7
기금지출	115.3	121.1	123.6	125.3	130.5	137.3	4.5
관리재정수지	-33.4	-46.5	-36.9	-33.1	-25.7	-17.7	
(GDP 대비)	(-2.1)	(-3.0)	(-2.3)	(-2.0)	(-1.4)	(-0.9)	
국가채무	569.9	595.1	644.9	692.9	731.7	761.0	
(GDP 대비)	(36.9)	(38.5)	(40.1)	(41.0)	(41.1)	(40.5)	

조세

■ 2015년 국세 징수 실적

2015년 우리 국민이 납부한 국세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해 217조9천억원이다.

이는 2014년 실적(205조5천억원)보다 12조4천억원(6.0%) 증가한 것이고 2015년 예산(215조7천억원)보다는 2조2천억원(1.0%) 증가한 수준으로 4년 만에 세수결손을 탈출했다.

2015년 세수 실적이 개선된 것은 ①부동산 거래량, 증권거래대금 증가 등 자산시장의 호조와 ②대기업에 대한 비과세·감면 정비 등 세법개정 효과 ③세정노력 등에 주로 기인한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2014년 실적(199조3천억원)보다 11조5천억원 증가한 210조8천억원이 징수됐고 특별회계는 2014년 실적(6조2천억원)보다 9천억원 증가한 7조1천억원을 기록했다.

주요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는 60조7천억원이 징수돼 2014년 실적(53조3천억원)보다 7조4천억원이 증가했다.

소득 종류별로는 근로소득세가 27조1천억원으로 2014년 실적(25조4천억원)보다 1조7천억원 증가했는데 이는 취업자수 증가 및 명목임금 상승 등에 기인한다.

또한 부동산 거래 활성화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3조9천억원 증가했고 개인사업자 신고실적 개선 등으로 종합소득세가 1조3천억원 증가했다. 다만 저축성 수신 평균금리 하락 등으로 이자소득세는 4천억원 감소했다.

법인세는 비과세·감면 정비, 사전 성실신고 지원 효과 등으로 2014년 실적(42조7천억원)보다 2조4천억원 증가한 45조원을 기록했으나 부가가치세는 수입 부진에 따른 수입분 부가가치세 감소에 따라 2014년 실적(57조1천억원)보다 3조원 감소한 54조2천억원을 기록했다.

관세의 경우 수입 부진에 따라 2014년 실적(8조7천억원)보다 2천억원 감소한 8조5천억원을 기록했다.

이 외에도 개별소비세는 담배 개별소비세 신설, 발전용 유연탄 과세 등으로 2조4천억원 증가했으며 증권거래세는 증권거래대금 증가에 따라 1조5천억원 증가했다.

2015년 국제징수 실적

(단위 : 조원)

세 목	2014년 실적	2015년	
		예 산	실 적
총국세	205.5	215.7	217.9
일반회계	199.3	208.8	210.8
소득세	53.3	58.8	60.7
종합소득세	11.5	12.2	12.8
근로소득세	25.4	27.1	27.1
양도소득세	8.0	10.5	11.9
이자소득세	2.9	2.6	2.5
법인세	42.7	44.1	45.0
상속증여세	4.6	5.2	5.0
부가가치세	57.1	55.4	54.2
개별소비세	5.6	7.8	8.0
증권거래세	3.1	3.9	4.7
인지세	0.7	1.0	1.0
과년도수입	4.0	3.6	3.4
교통에너지환경세	13.4	13.9	14.1
관 세	8.7	8.6	8.5
교육세	4.6	5.2	4.9
종합부동산세	1.3	1.3	1.4
특별회계	6.2	7.0	7.1
주 세	2.9	3.3	3.2
농어촌특별세	3.3	3.7	3.8

■ 2015년 세법개정 주요 내용

2015년 세법개정은 '경쟁력을 갖춘 공평하고 원칙이 있는 세제'라는 비전과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조세체계 구축', '과세형평성 제고 및 안정적 세입기반 확보'라는 중장기 방향 아래 추진됐다.

청년일자리 창출 등 미래세대에 대한 지원과 함께 수출·투자 활성화, 기업구조조정 뒷받침 등을 통해 경제활력 강화를 추진했으며 근로자·자영업자의 재산형성과 중소기업·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등 민생안정을 세제 차원에서 적극 뒷받침하고자 했다.

또한 세원투명성 제고 등 공평과세를 추진하고 조세제도를 합리화하는 내용도 세법개정에 함께 담았다.

2015년 세법개정 방향

비전	경쟁력을 갖춘 공평하고 원칙이 있는 세제			
중장기 정책 방향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조세체계 구축		과세형평성 제고 및 안정적 세입기반 확보	
기본 방향 및 추진 전략	경제 활성화	민생안정	공평과세	세제 합리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소비여건 개선 수출·투자 활성화 기업구조조정 뒷받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산형성·주거 안정 지원 중소·벤처기업 근로자 지원 자영업자·농어민 지원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세형평성 제고 비과세·감면 제도 합리화 세원투명성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세부담 수준 합리화 등

■ 경제활력 강화

경제활력 강화를 위해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일자리 창출이었다.

청년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직전연도 대비 청년 정규직 근로자수가 증가한 기업에 대해 1인당 500만원(대기업은 200만원)을 세액공제 해주는 '청년고용증대세제'를 신설했으며, 지원의 시급성을 감안해 2015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청년들의 중소기업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율을 50%→70%로 인상하고 적용기한을 2018년까지 연장했다.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창업기업의 소득세·법인세를 5년간 50% 감면해주는 '창업 중소기업 등 세액감면' 적용대상에 보안시스템 서비스업을 추가하고 적용기한을 2018년까지 연장했으며, 사업자가 재창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재기중소기업인에 대한 체납처분유예 및 징수유예 기간을 확대했다.

소비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건전한 소비 진작을 위해 2015년 신용카드 등 본인사용액이 2014년보다 증가한 자에 한해 체크카드·현금영수증 등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30%→50%로 인상하는 제도를 1년간 시행하기로 했으며 녹용, 방향용 화장품, 대용량 가전제품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폐지했다.

마지막으로 수출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수출 중소기업이 원재료 등 재화 수입시 세관에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신고 시까지 납부 유예하는 제도를 신설했으며, 해외 투자활성화를 위해 해외주식 매매 및 평가·환차익에 대해 비과세하는 '해외주식 투자전용 펀드'를 도입했다.

■ 민생안정

민생안정을 위해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한 것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SA) 도입이다.

ISA는 저금리 시대 근로자·자영업자의 재산형성을 위해 예·적금,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편입·교체하여 운용하는 금융상품으로 매년 최대 2천만원까지 총 5년간 투자할 수 있으며, 만기 인출 시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은 200만원까지 비과세하고 초과분에 대해 9%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하는 세제혜택이 있다.

중소·벤처기업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핵심인력성과보상금(내일채움공제) 중 기업 납입금에 대한 소득세를 50% 감면해주는 제도를 신설했으며 중소기업 우리사주 조합원의 경우, 우리사주를 6년 이상 보유·인출 시 소득세를 100% 감면해 주도록 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정규직 전환 근로자의 임금증가액에 대해 중소기업 20%, 중견기업 10%, 대기업 5%의 추가공제를 도입했으며 중소기업이 비정규직 근로자를 2016년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1인당 200만원 세액공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농어업 경쟁력 강화 및 생활지원을 위해 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을 2018년까지 3년

연장했으며 전통주류 육성을 위해 음식업자가 탁·약주 등을 제조하여 자신의 영업장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소규모 전통주류 제조면허를 신설했다.

■ 공평과세

과세 형평성 제고를 위한 노력도 지속됐다. 업무용 승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사업 상의 비용으로 처리해 세금이 탈루되고 조세형평성이 훼손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인정 기준을 마련했다.

감가상각비, 임차료, 보험료, 유류비 등 업무용 승용차에 소요되는 비용은 운행기록을 통해 입증된 업무 사용비율만큼 인정하되, 승용차별로 연간 비용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는 운행기록 작성의무를 면제하여 중소기업자들에게 과도한 납세협력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또한,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 한도를 매년 800만원으로 설정하고 초과분은 이월하여 공제받도록 했다.

47년 만에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근거와 납세방법·절차를 마련하여 2018년부터 실시하도록 했다. 종전 기타 소득 중 사례금으로 과세되고 있던 것을 '종교인 소득'으로 소득구분을 변경했으며, 필요경비를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했다.

종교인은 본인의 소득을 근로소득으로도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근로소득으로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도 원천징수는 선택사항으로 규정했다.

이외에도 고용요건과 무관하게 세제지원이 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R&D 설비, 에너지 절약시설에 적용되던 투자세액공제율(대기업 3%, 중견기업 5%, 중소기업 10%)을 조정(대기업 1%, 중견기업 3%, 중소기업 6%)했다.

법인사업자와의 과세형평 등을 감안하여 일정 매출액(10억원) 초과 사업자는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했으며, 고철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조세탈루를 방지하기 위해 매입자납부특례 대상에 철스크랩을 추가했다.

마지막으로 성실신고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 범위를 체납국세 5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확대했고 관세에 대해서도 내국세와 마찬가지로 무신고 가산세(일반 20%, 부정 40%)를 신설했다.

■ 조세제도 합리화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납세 편의를 제고하고 상속·증여 재산 평가 관련 절차를 개선했다.

세금계산서 지연수취에 따른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에도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하도록 했고, 상속·증여 재산 평가 시 과세관청뿐만 아니라 납세자도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자문요청이 가능하도록 허용했다.

대기업이 특정 사업연도에 과도하게 이월결손금 공제를 받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연간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당해소득의 80%로 신설했다.

마지막으로 고·저열량 유연탄 간 상대가격 체계를 합리화하기 위해 과세기준을 세분화(고·저열량탄 24원·22원 →

고·중·저열량탄 27원·24원·21원)했으며 교통시설·환경·지역발전 투자재원 확보를 위해 교통·에너지·환경세를 2018년까지 존치시키기로 했다.

공정거래

■ 개요

2015년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는 데 주력했다.

대·중소기업 간 거래에서 특히 하도급대금 미지급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고 건설, 의류, 기계, 자동차, 선박 등 하도급대금 관련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업종을 집중 조사했다.

중견기업이나 규모가 큰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1~2차 협력업체를 대기업보다 먼저 조사하는 '역추적(윗 물꼬뜨기)' 조사 방식도 새로 도입했다. '대기업이 하도급 대금을 안 주니 우리도 못 준다'고 1차 협력업체가 버티면 2~3차 업체가 차례로 피해를 보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피해 중소기업들이 대기업의 보복을 걱정하지 않고 공정위에 신고하거나 제보할 수 있도록 익명제보 센터를 열었다.

공정위는 2015년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의 독과점 문제를 전담 태스크포스(TF)까지 구성해 집중적으로 점검하기도 했다. 미국에 기반을 둔 글로벌 업체인 오라클의 '제품 끼워팔기' 의혹, 통신용 칩 제조업체인 퀄컴의 시장지배력 남용 여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대기업과 관련해서는 한진그룹, 현대그룹, 하이트진로 등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조사에 착수했다.

제일모직과 옛 삼성물산 합병, 현대제철과 현대하이스코 합병 과정에서 삼성그룹과 현대차그룹의 순환출자 고리가 강화됐으니 이를 풀기 위해 주식 일부를 팔아야 한다는 판단도 내놴다.

이는 새로운 순환출자 고리를 만들거나 기존 순환출자를 강화할 수 없도록 규정한 개정 공정거래법이 적용된 첫 사례다.

공정위는 해외 직구에 따른 피해 사례가 잇따르자 소비자 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해외 인터넷 쇼핑몰을 조사하고, 불공정한 아이폰 수리약관을 고치라는 시정명령을 내리는 등 생활과 밀접한 분야 조사를 확대했다.

2015년 초부터 공정위는 거액의 과징금이 걸린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하면서 무리한 제재를 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에 직면했다.

이를 계기로 공정위는 사건 관련자 진술 내용을 철저히 검증, 조사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사건 처리시간을 단축해 기업 부담을 줄여주는 등 사건 처리 절차를 대대적으로 뜯어고친 '사건처리 3.0' 정책을 내놴다.

■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 관행 개선

하도급 대금 미지급과 관련해 공정위는 법 위반 기업을 처